

##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안)

###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고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의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나. 기금의 운용관리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 다. 기금의 회계관리 방법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 라.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자연재해대책법(제63조, 제64조)
- 나.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58조, 제59조)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63조의 규정에서 정한 재해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금
3. 기타 잡수입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건설국장, 기금출납원은 방재계장이 된다.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  
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  
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 관 련 법 규

### □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재해대책기금의 적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4조(재해대책기금의 운용등) ①재해대책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한 재해예방등의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재해대책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해대책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재해대책기금의 용도)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예방등의 용도”라 함은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4.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59조(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 ①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따로 계좌를 설정하여 재해대책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